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22년 2월)

2022. 2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(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- (월간 워드 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
- (월간 주요 상담사례)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(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, 총 10개)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

순위	저작물 종류별	기타
1	영상	이용
2	사진	등록
3	영화	제작
4	그림	유튜브
5	폰트	침해

※ 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)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'ACC어린이마음고운체' 글꼴로 작성

<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>

○ (영상) 유명 포털에서 판매 중인 영화를 구입하였다. 해당 영화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업로드하면 문제가 되는가?

–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.[1] 따라서 감상용으로 허락된 것을 영상제작에 이용하고 인터넷에 업로드하면 저작권(복제권, 전송권)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.

○ (사진) 국립민속박물관이 기증을 받아 소장 중인 자료를 국민들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면 문제가 되는가?

– 저작권법에서 정한 문화시설[2]은 법에서 정한 상당한 조사[3]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(외국인의 저작물 제외)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다면, 보관된 자료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그 자료를 복제·배포·공연·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

– 다만, 저작물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,[4]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을 해야하며, 저작재산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요청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.[5]

○ (영화) 영화를 제작 중인데, 배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장면이 있다. 음악에 대한 권리처리가 필요한가?

– 배우가 직접 가창을 하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(작곡, 작사)이 이용되므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.

○ (그림) 친구로 등록되어 있어야 게시글을 볼 수 있는 SNS 계정에 그림을 업로드한 것도 공표에 해당하는가?

---

1) 저작권법 제46조.
2)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2.
3) 저작권법 제16조의3.
4)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.
5) 저작권법 제35조의4 참조.

- 저작권법상 '공중'은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말하고,[6] '공표'는 공연,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,[7]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계정에 업로드하는 것도 공표에 해당한다.

○ (폰트)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공공누리 제1유형 폰트를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?

- 공공누리 제1유형[8]의 저작물은 출처를 표시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.

< 기타 주요 상담 >

○ (이용) 회사의 업무로 제작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이용해도 되는가?

-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가지나, 예외적으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.[9][10] 따라서 이를 허락 없이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.

○ (등록)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. 위원회는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어떤 부분을 심사하는 것인가?

-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신청건에 대해 형식적·절차적 측면만 심사하고 있다.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'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,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'고 판단하였다.[11]

---

6)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.
7)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.
8) https://www.kogl.or.kr/info/license.do
9) 저작권법 제9조.
10)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
①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,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
②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
③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
④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
⑤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
11) 대법원 1996. 8. 23., 선고, 94누5632, 판결.

○ (제작) 책 리뷰 서비스를 작년부터 운영 중이다. 올해 대형 회사가 동일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서비스 명칭이 자사와 동일하다. 해당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?

– 단어나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,[12] 서비스 명칭이 동일하여도 저작권법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.

○ (유튜브) 길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려 한다. 주변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녹음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가?

– 촬영 과정에서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복제·배포· 공연·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.[13] 그러나 음악이 주된 촬영대상이 되거나,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라도 이용방식과 목적, 용도, 방법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형태라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.

○ (침해) 소설가가 작품에서 처음 창작한 A단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가?

– 단어나 단어와 단어로 이루어진 단문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 이는 단어나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들을 저작물로 인정하게 되면, 문화의 향상·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.

※ 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)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'ACC어린이가을담은체' 글꼴로 작성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12) 대법원 1977.7.12. 선고 77다90판결.
13) 저작권법 제35조의3.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22년 2월)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